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0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황정아·조인철·박정현

문금주 • 노종면 • 김남근

주철현 · 김 현 · 김영환

박용갑 • 조계원 • 허성무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.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.

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「의료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이 각각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,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,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,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 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(안 제51조의2 신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1조의2(노인에 대한 특례) ①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병 요양급여 연령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 연령에 1세를, 2028년 1월 1일부터는 2세를, 2029년 1월 1일부터는 3세를, 2030년 1월 1일부터는 4세를, 2031년 1월 1일부터는 5세를 각각 뺀 연령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1조의2(노인에 대한 특례) ①
	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
	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
	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
	보험급여의 범위·방법·절차,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	지부령으로 정한다.